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65
----------	-------

발의연월일 : 2025. 7. 14.

발 의 자 : 민형배 · 조계원 · 김문수
양부남 · 이개호 · 이성운
주철현 · 문정복 · 소병훈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부과 최대한도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천만 유로(약 270억 규모)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규제보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2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 ----- ----- ----- ----- ----- ----- ----- <u><단서 삭제></u>
1. ~ 3. (생략) ② ~ ⑨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